

[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안내]

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시행령[대통령령 제31576호, 2021. 3. 30. 제정] 공포·시행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을 2022년 3월 31일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1. 제출 서류(※자본금 및 장비 관련 증빙자료 제출 면제)

1.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 1부.
 2. 전력기술인 경력(보유)확인서 1부.(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)
 - 전력기술인 경력(보유)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.(협회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)
 -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각 1부.
 3. 신청인 확인서류 각 1부.
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)
 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※ 상기 제출서류는 협회 각 시·도회에 경력(보유)확인서 발급 신청 시 함께 제출(산업부 별도 제출×)

2. 등록 절차



3. [참고]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요건(시행령 [별표 2])

구분		요건
1. 자본금		☐ 2억원 이상
2. 기술인력	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	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☐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☐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
3. 장비	공용장비	☐ ①계전기 시험기: 2대, ②절연내력시험기(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): 1대, ③절연유내압 시험기: 1대, ④절연유 산가 측정기: 1대, ⑤절연저항 측정기(1,000V, 2,000MΩ): 2대, ⑥회로 시험기: 2대, ⑦특고압 COS 조작봉: 2대, ⑧적외선 열화상 카메라(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℃이상,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): 1대, ⑨전기품질분석기(전압, 전류, 전력, 역률, 고조파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): 1대, ⑩고압절연장갑: 3켤레, ⑪절연장화: 3켤레, ⑫절연안전모: 3개
	개인장비	☐ 접지저항 측정기, 절연저항 측정기(500V, 100MΩ), 클램프미터, 고압·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: 기술인력 1명당 각 1대